

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

발급번호: 제 호

기관(업체)명

대 표 자 성 명

사업자등록번호
(법인등록번호)

주사무소

소재지

전화번호

기 타
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3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